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변보호조치 요구 요건 완화〉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94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신변보호조치 요구 요건 완화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함)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의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공익신고자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공익 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 제1항).

Ⅲ. 검토의견 : 신변보호조치 요구 요건 완화

-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u>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u>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 ----- ----- <u>신변에 불안이 있는</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3조¹⁾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그러나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의적절한 신변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신변보호조치 요구 요건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신변보호조치는 적시에 조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게 되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2)(이하 본문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및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3)(이하 본문에서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함)에서는 신변보호조치의 요구 요건을 개정안과 같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부패행위 신고자 및 부정청구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와 달리 규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변보호조치 필요성을 신속히 판단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는 현행 규정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등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보다 불명확하고, “신변”, “불안” 등이 모호하여 신고자 보호에는 현행 규정이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임.

□ 또한, 신변보호조치 제도를 도입한 타 입법례⁴⁾에서도 신변보호조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신변보호조치 요건은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유사한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신변보호조치 요건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⁵⁾으로 공익신고의 신변보호조치 인용률이 부패 신고 신변보호조치 인용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현행 규정이 개정안보다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의 신변보호조치 관련 통계>

구분	신고 건수	신변보호 조치 요청	신변보호 조치 인용	신변보호 조치 종결	신변보호 조치 인용률
공익신고	32,259,262	99	51	48	51.51%
부패신고	74,842	48	23	25	47.91%

※ 2011.(「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2024. 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 참고자료 “신변보호조치 관련 입법례” 참조(p.8)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후 2019년에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신변보호조치 요건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동일하게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당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는 대부분 부패행위에 해당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규정이 개정안보다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고 보는 근거로 들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인용률을 살펴보면, 민간영역까지 아우르는 공익신고 건수가 공공부문에 한정된 부패신고 건수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공익신고 신변보호조치 인용률과 부패신고 신변보호조치 인용률의 차이(3.6%)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인 것인지,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신변보호조치 인용률과 신변보호조치 요건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변보호조치는 모두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들의 신변보호조치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⁶⁾

문 의 처
02)6788-5107

6)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마다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 수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신변보호조치 요건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청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청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신변안전조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다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①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